

제419회 임시회
'24. 7. 15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7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3. 제안사유

- 지역마다의 정체성과 역사·사회·문화적 특성이 브랜드가 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충청북도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.
- 이에, 충북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명 변경(안 제명)
 - (현행)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
 - (개정) 충청북도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
-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상징물 관리, 활용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, 안 제7조)
-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~안 제13조)

-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4조)
- 충북브랜드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민선 8기 충북도는 ‘충청북도’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확립하고 강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충청북도의 심벌마크를 교체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·활용하는 등 ‘충북브랜드’ 개발 및 홍보, 확산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통상 지역 브랜드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, 도시명, 심벌, 캐릭터, 슬로건, 명소, 축제, 특산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상징체계로써, 지역마다의 브랜드가 경쟁력이 되고 지역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.
- 충청북도의 상징물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「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」는 목적 및 규정내용이 상징물 관리에 한정되어 있어 상징물보다 더 포괄적인 브랜드의 개념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.
- 이에, 충북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는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
- 본 조례는 상징물을 포함한 중복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징물 제정 및 개정, 관리 및 홍보, 상징물 활용 사업 추진,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·운영,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 구성·운영 등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함.
- 본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는 상징물 관리에 한정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상징물을 포함하는 브랜드 관리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‘중복브랜드’와 ‘브랜드슬로건’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함.
- 안 제3조는 중복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함.
- 중복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,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, 중복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함.
-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현행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‘충청북도상징물관리위원회’는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,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등에 대한 자문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, 현행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중복브랜드 관리 등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‘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’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은 조례안의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여짐.
- 안 제14조는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3조는 도지사는 도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

규정하고 있고 바, 브랜드참여단 구성·운영은 도민의 참여를 통해
충북브랜드의 활용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 보여짐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충청북도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를 위하여 충청
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·운영,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 구성·운영
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, 법적·내
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